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연번	대상자 성명 (생년월일)	세대주 성 명	주 소	발급기간
1	박* (2007.04.14.)	박* 성명	은평구 은평로 ***	2024. 5 1. ~ 2025. 4. 30.
2	김* (2007.04.28.)	김* 성명	은평구 은평로 ***	2024. 5 1. ~ 2025. 4. 30.
3	김* (2007.04.03.)	김* 성명	은평구 백련산로 ***	2024. 5 1. ~ 2025. 4. 30.
4	문* (2007.04.05.)	문* 성명	은평구 은평로 ***	2024. 5 1. ~ 2025. 4. 30.

※ 해당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문의전화 : 02-351-5217)

2024년 4월 24일

응암제1동장 